

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7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3. .
제출자 복지과장

1. 제안이유

-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명확히 적시하여 경영책임자의 경영 의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복지재단 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고,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 1. 27.)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경영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

2. 주요내용

가. 대표이사 책임 명시(이사장 → 대표이사)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
 - 나) 경기도 : 복지정책과

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이사장은” 을 “대표이사는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이사장이” 를 “대표이사가” 로, “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” 를 “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획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복 지 과 장 강 영 화
	팀 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팀장 채 혜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최 규 현(☎261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<u>이사장은</u>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 <u>이사장이</u>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는 경우에는</u> <u>대표이사</u>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<u>대표이사</u>는 ----- ----- --. ----, <u>대표이사</u>가 ----- ----- <u>없을 경우에는</u> <u>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